第158回國會
(閉　會　中)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會議錄

第２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92年8月18日(火)
場　所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動力資源委員會)

議事日程

1.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運營의件
2. 3個法等改正審議班構成의件

審査된案件

1.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運營의件 …… 1面
2. 3個法등改正審議班構成의件 …… 7面

(10時43分　開議)

○委員長　申相式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次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

1.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運營의件

○委員長　申相式　議事日程　第1項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運營의件을　上程합니다.

지희 特別委員會의　運營에　관하여　3黨幹事間에　어제　진지한　論議를　한　결과　合意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合意事項에　관하여　朴相千幹事님　나오셔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相千委員　朴相千委員입니다.

어제　3黨　幹事間에　진지한　논의끝에　合意한　本　特委運營에관한件을　說明드리겠습니다.

첫째　特委는　3黨代表　合意事項을　基本바탕으로　하여　法案을　成案하여서　이를　議決한다.

둘째　特委　運營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3個法등改正審議班을　構成하여　法案을　成案한다.
   (1) 地方自治法등改正審議班
   (2) 大統領選擧法등改正審議班
   (3) 政治資金法등改正審議班
2. 위　3個法등改正審議班은　매일　午前　10時에　開會한다.
3. 위　3個班의　司會는　特委　委員이　順次로　擔當하되　議席數가　많은　交涉團體　부터　順次로　맡는다.

셋째　特委　全體會議와　3個法등改正審議班의　議決은　全員　合議制로　한다.　이것은　3黨代表　合意事項에　따른　것입니다.

넷째　위　3個法改正案의　1次處理　時限은　8月末까지로　한다.

이상이　本　特委運營에　관해서　어제　3黨幹事間에　合意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相式　방금　特委運營에　대하여　朴相千幹事님으로부터　幹事間　合意事項에　대하여　報告를　들었습니다.

特委運營에　대하여　다른　意見이　없으십니까?

○丁時采委員　議事進行發言있습니다.

○委員長　申相式　예.

丁時采委員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時采委員　民自黨의　丁時采委員입니다.

어제　3黨　幹事들께서　이　合意事項을　도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敬意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원래　委員會運營問題라든지　議事日程問題는　幹事들의　合意에　의해서　하도록　委任을　했기　때문에　幹事들의　合意事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슨　큰　異議를　단다는　것보다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委員長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몇가지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本委員會의 性格問題입니다.

지난번 本會議에서 우리가 議決하기에는 분명히 本委員會의 性格은 國會法 44條의 規定에 의해서 설치된 特別委員會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幹事間의 合意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보면 國會法 44條의 規定에 의한 特別委員會의 性格을 벗어난 부분이 없지 않은데 과연 委員長께서는 이 委員會가 國會法 44條 規定에 의한 特別委員會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 역시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本委員會가 國會法 44條에 의한 委員會라고 하면 적어도 이 特別委員會는 法案을 審議하거나 또는 案件을 審議하기 위해서 小委員會 또는 分科委員會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分科委員會는 豫決委員會에 둘 수 있는 것이고 기타 特別委員會에서는 小委員會를 두게 되어 있는데 本委員會의 運營에 관해서 어제 幹事들이 合意한 事項을 보면 小委員會가 아니고 法律改正審議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寡聞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우리 國會 안에서 어떤 案件을 審議하는데 班을 둔 것은 우리 國會法에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國政監査法에 보면 5條1項에 監査班을 둘 수 있다 하는 것 외에는 우리 國會法運營에 관해서 班을 둔다고 하는 規定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두어도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세번째 司會를 順次司會로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역시 國會法上의 小委員會가 되었든 안되었든간에 적어도 司會를 順次司會로 해서 본다는 것은 나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司會라고 하는 것은 會議의 合理的이고 能率的인 運營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한 司會는 적어도 議事整理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데 매일같이 司會가 바뀐다고 할 경우에 과연 이런 司會者로서의 機能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적어도 順次司會가 案件別 順次司會인지 그렇지 않으면 日別 順次司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에 날마다 司會가 바뀐다고 할 경우에 저는 審議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案件別로 한다면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 어느 案件을 한사람이 司會를 맡아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案件別로 司會를 보지 않고 적어도 日別로 해서 順次司會를 본다고 하면 이것은 國會法 精神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어느 會議를 막론하고 이 順次司會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委員長은 앞으로 順次司會로 해서 이 委員會가 運營된다고 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委員長으로서의 몇가지 정확한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全體國民들이 가장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이 委員會가 정말 누가 보더라도 가장 合理的이고 가장 能率的인 이런 委員會 運營이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運營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朴相千委員 저도 發言있습니다.

○委員長 申相式 朴委員님! 내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朴委員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順次的으로 發言機會 드리겠습니다.

丁委員 말씀 첫째가 本委員會의 特別委員會의 성격 문제인데 本委員會의 성격은 國會法에 의한 特別委員會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國會 本會議의 議決에 의해서 우리 特別委員會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 本委員會의 성격이 國會法에 준하느냐 안하느냐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小委員會를 構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과거부터 國會運營의 一般的인 慣例나 또 우리 國會法의 흐름에 보면 案件을 審議하는데 필요하게 될때는 各 常任委員會나 特別委員會에서 小委員會를 둘 수 있고 또 豫決委員會 같은 데에서는 分科委員會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小委員會는 둘 수도 있고 두지 아니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本特別委員會 構成過程부터 특수한 여건속에서 합의되어서 構成된 것이기 때문에 이 小委員會라는 명칭이 아니고 班이라는 이름으로 構成을 한다고 해서 法案 자체를 審議하는데 本質的으로 큰 문제는 없겠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특히 丁委員님께서 말씀하신대로 國政監査를 하러 갈 때에는 그것이 전부 班으로 편성해가지고 國政監査班으로 지금 1班 2班 3班으로 이렇게 해서 國政監査를 하고 있는 國會 慣例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司會를 順次的으로 하는 것은 우리 國會慣例上 과거에 들어본 적이 없다… 저도 順次的으로 司會를 하는 그런 國會 會議 어떤 會議도 지금까지 별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6名이 班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섯 사람이 全員合議制를 해야 된다 하는 大前提를 두고 볼 때에는 꼭 小委員長이나 委員長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정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本特別委員會 基本目的이 3個法등法律案의 改正案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논의하고 있는 3個 法律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면 되느냐 그와 같은 새로운 案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 幹事 合意의 基本的인 뜻이 다소 우리 귀에 서툴고 慣例나 傳統에 좀 맞지 않는 인상이 있더라도 本委員會의 法案 改正案 成案에 크게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수용하면서 國會法에 準해서 審議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答辯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朴委員 말씀하시지요.

○朴相千委員 지금 우리 特別委員會가 國會法上의 特別委員會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國會法 48條를 보면 1項에 特別委員會의 構成은 交涉團體 議席數의 比率도 構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黨代表께서 合意할 때 交涉團體 議席數의 比率을 무시하고 與野同數로 하게 해서 第1黨인 民自黨議員이 아홉 분 또 우리 民主黨이 여섯 분 國民黨이 세 분 이렇게 構成했습니다.

지금 이 國會法에 규정된 特別委員會構成에 관한 여러 規定은 強行規定이 아닙니다. 이와 달리 議決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特別委員會에 관한 國會法의 規定에 어긋났다고 해서 幹事合意가 잘못되었다는 식의 論理를 펴려면 우선 이 委員會를 國會法上의 特別委員會로 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 構成自體가 國會法 48條1項에 違反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國會法上의 特別委員會로 정했다 이겁니다. 이 말은 構成부터가 國會法에 規定되어 있는 特別委員會 構成에 관한 일응의 準則에 대한 例外로서 출발을 했고 또 특히 지금 丁委員께서 지적하신 小委員會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 特別委員會가 출발부터 與野同數로 構成을 해서 출발을 했고 또 特別委員會의 議決은 多數決로 하는 것이 原則인데 全員合議制로 한다고 이미 3黨代表께서 合意를 했습니다. 議決에 대한 例外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小委員會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法에 違反된다는 주장은 벌써 委員長님 설명으로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 小委員會로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小委員會 아닌 일종의 協商팀인 班構成을 하는 것이 더 나으냐 하는 문제만 남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適法 不適法의 문제는 小委員會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고 이렇게 規定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效率的이냐 하는 문제만 남는데 班으로 하는 것이 더 效率的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小委員會를 構成하면 小委員會는 特定案件을 審議하기 위해서 하고 그 案件을 여기에서 결정을 해서 小委員會에 回附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政府에서 國會에 提出한 地方自治法改正案 地方自治團體長選擧를

95年으로 연기하자는 그 改正案을 國會議長께서 當 特別委員會에 回附를 했는데 이것 提案說明 듣고 討論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 特別委員會가 지난번 우리 國會의 對峙局面때 民自黨이 쉽게 政府가 내놓은 案을 通過시키기 위해서 強行處理하기 위해서 구상했던 그런 特別委員會의 성격으로 國民들한테 誤認될 우려가 농후합니다.

그런데 이 特別委員會가 그런 종류의 特別委員會가 아닌 것은 3黨代表合意事項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小委員會를 構成할 때에는 그런 애로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司會를 문제 삼았습니다마는 일단 國會法上의 小委員會를 構成하면 小委員長을 두어야 합니다. 小委員長이 안 나오면 小委員會는 마비되어 버립니다.

또 小委員長이 안 나올때 다른 사람이 司會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것은 小委員長이 지정한 사람이 司會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3黨中의 어느 한 黨이 약간의 불편한 심기가 있을 때 小委員長이 나오지 않으면 特委는 사실상 마비되어 버립니다.

무엇때문에 이렇게 옹졸하고 圖式化된 방법으로 特委를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애초에 同數로 출발을 했고 全員合議制 하는 國會法에 없는 制度를 채택했고… 이것은 우리가 채택한 것이 아닙니다. 3黨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만 圖式化된 小委員會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고 활발한 討論을 또 協商을 할 수가 없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래서 우리 3黨幹事間에 이렇게 合意한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 덧붙일 것은 우리가 우리 政治特委를 성공시키려면 다시 말하면 9月 定期國會가 잘 운영되게 하고 國民들의 불안을 덜게 하려면 일대 發想의 轉換이 필요하고 자잘한 條文 하나 몇 條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하고 저렇게 했느냐 이렇게 따져 가지고는 벌써 싹수가 노랗습니다.

우리 特委委員 열여덟名이 發想의 轉換이라고 할까 學者들이 말하는 水平的 思考라고 할까 이런 큰 大局을 보는 눈을 가지고 단절된 대화와 협상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것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特別委員會의 장래는 뻔합니다. 그래서 좀더 자유로운 상태하에서 협상을 하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협상에 異議가 있고 협상내용에 불만이 있으면 合意 안하면 그만입니다. 이것은 全員合議制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아침에 合意한다 그래가지고 몇 십분을 기다리게 하더니 또 나와서 發言한다고 하는 것은 特委 장래를 볼 때 대단히 섭섭하고 또 불안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委員長 申相式 金榮珍委員님 말씀하십시오.

○金榮珍委員 지금 저희들은 이 特別委員會 運營에 지장을 초래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 3黨 幹事間에 合意된 사항에 대해서 否認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 委員長에게 全般的인 의문사항을 質疑한 것이고 그 진행에 관한 委員長의 소신을 들은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委員長 말씀에 異議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마치 우리가 會議進行에 지장을 주기 위해서 發言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셨다면 그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委員長 申相式 趙舜衡委員 말씀하십시오.

○趙舜衡委員 丁時采委員께서 저희 3黨 幹事間의 合意事項에 대해서 두 세가지 문제를 제기하시고 委員長께 말씀을 드리고 委員長의 해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黨의 朴相千委員이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입장은 아마 國民黨 委員들도 같은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丁時采委員께서 제기하신 두 세가지 문제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國會나 常任委員會는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議政生活 다 오래하신 분들이고 다 그러신데 이 3黨 幹事間의 合意가 준수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이 會議席上에서 異議를 제기하고…

물론 아까 金榮珍委員 말씀하시는 것으로

는 委員長한테 그냥 물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나 오늘 진행된 상황을 보아서는 10時에 開議가 안되고 지금 한 40分내지 50分 늦었습니다. 물론 交涉團體 各黨 사정에 의해서 協議도 하고 으레이 國會에서는 會議가 좀 늦는 것도 慣例이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特委가 活動時限이 8月31日로 지금 合意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時限으로도 쫓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特委라는 것이 결국 3黨代表會談의 3黨 指導者의 政治的 決斷에 의해서 이것이 구성된 것입니다. 물론 形式論理로 보아서는 분명히 本會議 議決로 해서 國會法上의 特別委員會로 구성은 되었지마는 그러나 이 特委의 운영은 적어도 國會法의 정신이나 明文規定에 위배되지 않는 한 우리 委員會가 自律的으로 고도의 政治力을 발휘하고 裁量을 발휘해서 운영하지 않는 한 이런 難題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朴相千委員이 한 두가지 말씀을 하셨지마는 3黨 幹事間의 合意가 不法이나 國會法을 위반한 것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地方自治法이라는 것이 民主國家의 根幹이 되는 地方自治制選擧가 준수 안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3黨間의 合意事項이 결코 國會法의 明文規定이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國會 特委의 고유의 권한으로 自律的으로 이것은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特委가 원만하게 진행되려면 委員長과 3黨 幹事間에 合意본 것이 그대로 遵守가 되고 또 거기에 異見이 있다면 各黨의 委員들끼리 협의하는 모임에서 전부 정리가 되어서 나와야지 이 자리에서 같은 黨所屬 委員하고 委員長하고 서로 問答 벌이고 他黨委員이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고 이래 가지고서는 우리 委員會 장래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委員長 申相式 金重韓委員 말씀하시지요.

○金重韓委員 金重韓委員입니다.

우리 特別委員會 장래가 우려할 바는 없고 幹事들間에 화기애애하게 몇 時間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合意事項이 나왔는데 지금 上程된 案件이 우리 特委運營에 관한 事項이기 때문에 特委運營을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의견제시는 누구나가 다 자유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3黨 幹事가 合意를 했다손치더라도 그 合意內容중에 무엇이 미진한 것인가 무엇이 빠졌는가 무엇이 보완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견은 각자 提示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提示된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른 의견을 提示하면 진실로 特委運營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幹事間에 合意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미진한 문제는 물을 수 있는 것이고 幹事間에 合意된 案보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提示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다시 委員會 議決事項으로 되면 그 또한 좋은 것이기 때문에 會議를 원만하게 運營하기 위해서는 이런 저런 좋은 의견을 모두 수렴하는 자세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璋鎭委員 金重韓委員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委員長께 문의할 사항이 있고 하면 근 3·40分동안 與黨所屬 委員들이 懇談會形式으로 지루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質問하고 答辯하고 그렇게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言論들이 지켜보고 國民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特委運營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여러가지 얘기를 開陳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먼저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特委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가지고 炎天下에서 이 곤혹을 치르고 뭔가 突破口를 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政府與黨이 地方自治團體長選擧를 실시 안해가지고 엄청난 破局에 직면하게 되고 國民으로부터 不信을 받게 되고 경색된 政局때문에 여러가지 해야 할 많은 사항들이 계속해서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 突破口를 찾기 위해서

3黨 代表들이 合意해가지고 特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團體長選擧의 當爲性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해요. 意識의 大轉換이 필요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丁時采委員님 같은 분들이 하나로서 끝나야지 두분 세분 나와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法的인 當爲性을 지적해 봅시다.

地方自治法에 의해가지고 附則 2條2項은 勸勉事項이 아닙니다. 法的 拘束力을 가진 사항입니다.

今年 6月末까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破棄하고 지키지 않고 霧散시켜버렸다 이것입니다. 法的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두번째로 政治的인 當爲性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행 地方自治法은 물론 당초에는 89年12月19日 4黨 構造下에서 合意해가지고 定期國會 마지막으로 통과된 사항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90年1月22日 3黨이 통합해가지고 與大國會下에서 만들어졌던 地方自治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2月31日 大統領이 公布까지 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政治的인 當爲性으로 봐서라도 당연히 실시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道義的인 當爲性을 지적해 봅시다. 6·29宣言해가지고 盧大統領이 地方自治 完全實施를 몇번 약속했다 말이에요. 그것을 파기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政治史的인 當爲性만 하더라도 盧大統領의 업적을 논함에 있어서 地方自治 民主主義를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실시했다는 그런 政治史的인 의미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國會議員選擧때 民意에 물어보겠다 그때 過半數를 못 얻었어요. 30몇% 밖에 못 얻었는데 이런 측면에서 당연히 실시했어야 하는데 政府與黨에서 破棄하고 안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特別委員會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친애하는 與黨側 委員 여러분들 발상의 大轉換 의식의 大轉換이 있어가지고 자잘하고 복잡한 要式行爲는 그만 따지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生産的이고 效率的이고 國民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런 合意된 작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빈 마음으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李仁濟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申相式 李仁濟委員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李仁濟委員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與野幹事委員님끼리 合意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異議를 달 생각이 없었고 또 우리 黨 아까 懇談會할 때 어느 정도 이해가 갔었는데 지금 朴相千幹事님께서 설명하시는 가운데 제가 알고 있던 사항하고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當 特別委員會에서 小委員會를 만든다면 마치 政府가 提案한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을 이 委員會에서 다루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 委員會는 그런 성격의 委員會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當 特別委員會는 3黨 總務間의 合意에 의해서 本會議 議決로써 구성된 委員會입니다. 따라서 本會議에서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는 委員會이지 다른 委員會가 아닙니다.

本會議 議決때의 會議錄을 보니까 "國會法 第44條 規定에 의하여 현재 國會에 繫留되어 있는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과 政治資金法 그리고 大統領選擧法 등 政治關係法 改正問題를 協議 審査하기 위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國會 本會議 議決에 분명히 현재 繫留되어 있는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을 協議 審査하는 것이 本委員會의 임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의문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申相式 朴相千委員 말씀하십시오.

○朴相千委員 疑問事項에 대한 答辯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政府提出의 地方自治法改正案이 우리 特委로 넘어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도 審議한 것입니다. 審議하는데 審議하는 방법

이 그 法 審議하려고 만든 特委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對峙政局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協商案을 만들기 위해서 설치된 特委이지 政府가 내놓은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을 審議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만든 特委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小委員會를 구성하는 것 보다는 協商팀을 구성해서 國會法의 細部的인 제약을 벗어나서 좀더 자유로운 意見接近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그 法案은 民自黨 여러분이 民自黨 黨案으로 地方自治法改正審議班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으로 설명하세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審議해야지 마치 그 法 審議하기 위해서 지금 彈劾이 거론되고 있는 內務部長官 불러다가 提案說明 듣고 討論 듣고 이러라고 特委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이런 趣旨입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기 바랍니다.

○委員長 申相式 그러면 지금까지 委員님들께서 말씀하신 뜻에 준해서 우리 朴相千幹事께서 報告하신 特委運營의件에 대해서는 3黨幹事 合意한 대로 議決할 것을 宣布합니다.

異議없으시지요?

(「異議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른 意見이 안계시면 特委運營의件에 대해서는 3黨 幹事間 合意한대로 議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

2. 3個法등改正審議班構成의件

(11時15分)

○委員長 申相式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3個法등改正審議班構成의件을 上程합니다.

이 案件은 조금 전 特委運營의件에서 議決한 바에 따라 3個法등改正審議班을 構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內容을 말씀드리면 3個審議班은 地方自治法등改正審議班 大統領選擧法등改正審議班 政治資金法등改正審議班으로 하고 各 審議班의 委員數는 6人으로 하며 그 構成比率은 民主自由黨 民主黨 統一國民黨이 각각 3對2對1의 比率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事前에 交涉團體에서 제출한 各 改正審議班의 委員名單은 다음과 같습니다.

地方自治法등改正審議班은 申相式委員 丁時采委員 康容植委員 金璋鎬委員 洪思德委員 尹榮卓委員 大統領選擧法등改正審議班은 李仁濟委員 崔在旭委員 金榮珍委員 趙舜衡委員 朴相千委員 邊精一委員 政治資金法등改正審議班은 金重緯委員 黃潤錫委員 姜在涉委員 金德圭委員 辛基夏委員 丁璋鉉委員입니다.

그러면 3個法등改正審議班을 이와같이 構成하고자 하는데 다른 意見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이 3個改正審議班이 構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散會直後 이 3個法등改正審議班이 活動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무쪼록 與野間에 진지한 노력을 하셔서 1次 活動時限인 8月末까지 3個法案등을 成案하여 委員會에 報告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議事日程은 幹事들과 協議하여 추후에 通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散會를 宣布하고자 합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時17分 散會)

○出席委員

申相式	康容植	姜在涉
金榮珍	金重緯	李仁濟
丁時采	崔在旭	黃潤錫
金德圭	金璋鎬	朴相千
辛基夏	趙舜衡	洪思德
邊精一	尹榮卓	丁璋鉉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專門委員	姜星達
立法審議官	宋金同
立法審議官	朴奉國
立法審議官	李昇薰
立法審議官	玄聖南